

제405회 정례회
'22. 12. 5.(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·운영
지원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김정일 의원 등 7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11월 22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3일

3. 제안사유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·발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협조 및 지원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대진)

가. 제출배경
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41조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·발전을 위하여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,

- 이에 「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·운영 지원 조례」 제정을 통하여,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**안 제2조**는 “청소년수련시설”을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로 용어를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.
- **안 제3조**는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,
 -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주로 공익활동을 주관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 시 방식의 투명성 제고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**안 제4조**는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청소년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,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,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,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등으로 규정하였으며,
 -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 이는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- **안 제5조**는 **안 제5조**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도록 규정한 것임.
 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」 제24조¹⁾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이를 수행할 때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.

1) 「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」 제24조(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위탁사업)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(이하 “지방시설협회”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이 수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
2. 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연수, 권익증진 및 교류사업
3. 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의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
4. 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의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·연구·지원사업
5.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시설협회 소관 사업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 따라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.
-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립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, 특히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강화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.